

영동군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공고

「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.

2018. 01. 03.

영 동 군



1. 공고사항

- 가. 목 적 : 영동군 관내에서 소요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지정하기 위함
- 나. 공 고 명 : 영동군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
- 다. 신청자격 : 발급대행자 지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자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조)
- 라. 사업구역 : 영동군 관내
- 마. 지정기간 :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
- 바. 지정대상자 수 : 2개업체 이상

2. 지정신청자 결격사유

- 가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나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다.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라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마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3. 발급대행자 선정 및 지정절차

- 가. 선정방법 :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서 및 발급수수료,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
- 나. 지정절차 : 군수는 선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시설 및 장비 구축을 하고 완료검사를 마치면 지정통보 한다. 다만,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연장 함.
- 다. 선정취소 : 지정신청 당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신청에서 제외하며,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선정을 취소한다.

4. 지정신청 및 제출서류

가. 신청기간 : 2018. 01. 03. ~ 2018. 01. 17. (15일간)

나. 접수장소 :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(교통팀 ☎ 043-740-3514)

다. 제출서류

- 1)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(별제 제2호 서식) 1부.
- 2) 사업계획서 1부.
- 3) 사업장의 위치·시설개요(장비 및 시설목록) 1부.
- 4) 사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1부.
- 5) 임대차(예정)계약서(건축물 및 토지 임대의 경우) 1부.
- 6)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계산서(대·중·소형별 분류) 1부.

5. 기타사항

가.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와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.

나. 제출된 관련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,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다. 지정신청자(대표자) 날인된 지정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우편접수 및 전자문서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라. 위 공고 이외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, 같은 법 시행규칙과 충청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합니다.

마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(☎740-351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1부. 끝.